6-28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2026. 5. 22. 제정

주무부서 : 연구처 공동기기센터 기기분석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장비”라 함은 과학기술 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 기자재 및 3천만원 이상의 실험실습용 기자재를 말한다.
2. “공동활용 연구장비”라 함은 본교 소속 교원, 직원, 학생 및 외부 이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구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센터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 교비 예산으로 구입하여 공동기기센터 또는 BT기기센터에 자산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나.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 교비 예산으로 구입하여 해당 대학(원) 교학지원팀 자산으로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장비

3. “운영부서”라 함은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소관하여 운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하며, 공동기기센터, BT기기센터 및 교학지원팀을 포함한다.
4. “장비책임자”라 함은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에 한하여 운영부서장으로부터 운영, 관리 및 이용 정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장비관리자”라 함은 모든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공동활용 시스템”이라 함은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예약, 이용내역 확인 및 이용료 결제 등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공동기기센터 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BT기기센터 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및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에 대해 각각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이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연구자료”라 함은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생성된 데이터, 이미지, 영상, 분석 결과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동활용 시스템에 등록된 교비 예산으로 구입한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연구장비 도입 및 공동활용에 대한 심의) 연구장비 도입과 공동활용 심의에 대한 사항은 「연구장비도입・공동활용심의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른다.

제5조(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등록) ①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선정된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력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동기기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동기기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학과보유 공동활용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장비책임자는 등록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학과보유 공동활용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장소) 공동활용 연구장비는 해당 장비가 설치된 공간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이용신청 절차 및 관리) ①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자는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동활용 시스템에 게시된 공동활용 연구장비별 이용수칙을 준수하여, 예약된 시간에 의뢰분석, 직접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직접분석 방법으로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해당 연구장비 특성에 따른 자격 및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방법 및 안전 수칙에 대해 교육한 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장 또는 장비책임자는 이용자가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방법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1.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료의 납부
2. 공동활용 연구장비별 이용수칙을 성실히 준수
3.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장비관리자에게 통보
4.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제9조(이용 제한) 운영부서장 또는 장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을 거절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지 않고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2.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방법 또는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4.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장비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산정) ①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변경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참고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 본교 소속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의 이용료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이용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기기센터 및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료 운영 시행세칙」, 「BT기기센터 이용료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조(이용료 관리)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료는 교비회계로 귀속되며,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운영, 유지보수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자료의 관리) ① 모든 연구자료는 이용자의 소유이며, 운영부서장, 장비책임자 또는 장비관리자는 이용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연구자료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현황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형태로 수집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직접분석 연구자료는 이용자가 개인용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뢰분석 연구자료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

제13조(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 및 유지보수) ① 장비책임자 또는 장비관리자는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 내역과 소모품 교체,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이용 및 유지보수 내역 관리는 「자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관련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기기센터 규정」, 「BT기기센터 운영 규정」, 「공동기기센터 및 학과보유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료 운영 시행세칙」, 「BT기기센터 이용료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력카드

관리번호	*미기재(공동기기센터 작성)*	
자산번호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제작사(국가)		
장비가격		
도입일자		
설치장소		
장비책임자	소 속	
	성 명	
	연락처	
	e-mail	
장비관리자	소 속	
	성 명	
	연락처	
	e-mail	
용도		
기본사양		
응용분야		
기타		
장비사진	파일로 송부 바랍니다.	

※ 중앙대학교 학과보유 공동활용 시스템에 기재될 내용이오니 정성껏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